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공 시 최 고

사 건 2007카공39 공시최고

신 청 인 이 영 수

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09

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,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8. 3. 17. 14: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2007년 11월 26일

판 사 이 동 철

종 류 : 자기앞수표

번 호 : 라가 22099609

액 면 : 금 1,000,000원 (1매)

발 행 일 : 2007년 11월 19일

발 행 인 : 합천 삼가농협